

체육시설업 신고(변경신고)서

(앞쪽)

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| 접수일      | 처리기간        | 신 고: 7일<br>변경신고: 5일 |
| 신고인         | ①성명(대표자) | 생년월일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| 전화번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영업소         | 상호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| 전화번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②종류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③규모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체육지도자       | 성명       |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④변경신고<br>사항 | 신고번호     | 신고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제 호      | 년 월 일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변경 전     | 변경 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고인<br>제출서류    | 1.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1부<br>2.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<br>3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) 1부<br>4.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|      |       |     |    | 수수료<br>특별자치시·특별<br>자치도·시·군·<br>구 조례로 정하는<br>금액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공부(公簿)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인날짜 | 확인 결과 | 확인자 | 비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건축물관리대장<br>토지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### 관련법규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

<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요트장업     | 7. 수영장업    | 13. 무도학원업      |
| 2. 조정장업     | 8. 체육도장업   | 14. 무도장업       |
| 3. 카누장업     | 9. 골프 연습장업 | 15. 야구장업       |
| 4. 빙상장업     | 10. 체력단련장업 | 16.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|
| 5. 승마장업     | 11. 당구장업   | 17. 체육교습업      |
| 6. 종합 체육시설업 | 12. 썰매장업   | 18. 인공암벽장업     |

### 작성요령

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·변경신고를 하려는 자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)의 성명을 적습니다.

②란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.  
다만, 체육도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,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. 예시) 체육교습업(축구)

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. 다만,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,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(사업장 바닥면적)을 적습니다.

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.

### 유의사항

-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제1호)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제3호).
-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제4호).
-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,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# 처리절차

